
01. 일반사항	1
02. 계획 및 관리	1
03. 자재 관리	1
04. 품질 관리	1
05. 안전 관리	1
06. 환경 관리	1
07. 가시설물	1
08. 준 공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적 용

이 시방서는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군자차량기지 인재개발원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적용순서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조치한다.

②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법규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이방서에 관련법규(조례)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공사감독관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서울메트로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공사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건설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3)공사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 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로써 건설 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배치”동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에 적격한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관의 업무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이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를 시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설계도서 검토2-2

- ①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서울메트로에 통지하고 서울메트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1.7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나. 2.1.1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하자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③건설업자가 서울메트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서울메트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서울메트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책임한계

- ①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②공사목적물을 서울메트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③건설업자가 서울메트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현장대리인등의 현장 상주

- ①건설업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②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서울메트로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

- (1) 2004년 1월 1일부터 건설업자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2) 전자적 통보방법
 - ① 통보대상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②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정보통신망(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한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74 호
 - ③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사항
 - ④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1)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계획서”를 도급공사를 체결 한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 (1) 설계변경 사유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울메트로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명기된 사항.
 - ② “1.1(3) 법규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 ③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 자재 구입 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은 사항.
- (2) 변경 요청 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1.8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하도급

- (1) 하도급 건설업자 선정
건설업자가 공사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바에 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 계획서 등

- ① 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서류“하도급관련서류”에 따른다.

1.10 관련 기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 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고 현장대리인은 필요시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②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③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서류 등

1.11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 ③ 기타 건설관련법규

2.1 일반사항

2.1.1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

(1)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접합 성, 공사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공사한계

공사 진행 중 공사범위 및 공종별 한계가 불분명 할 경우는 건설업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등

①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양식, 제출부수,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제출 전 협의 및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2.2 견본

(1) 제출 및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서울메트로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제출 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바에 따른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는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3 공사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12cm)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준공서류”에 따라 하며, 또한 공사전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캐너 등으로 입력하여 CD-ROM으로 제작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무행정서류

2.3.1 비치 및 제출

건설업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관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지체 없이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서울메트로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① 정상착공 시 제출서류

- 가. 착공신고서
-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 라. 안전시공계획서
- 마. 품질관리계획서
- 바. 계약서 사본(내역서 포함)
- 사. 건설업면허증사본
- 아. 공사에정공정표
- 자. 착공전사진

② 착공지연 시 제출 서류

- 가. 정상착공 시 제출 서류
- 나.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 예정일

- 다. 착공지연관련 증빙자료(지장 물 현황 등)
- ③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시(착공지연 시는 당초 착공 예정일) 각 2부 제출.

2.3.3 공사일지

- ①제출서류 : 공사일지
- ②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7:00시 전(야간작업일 경우 익일 09:00)까지 유선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도록 한다.

2.3.4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기성검사원

- ①제출서류
 - 가. 기성검사원
 - 나. 기성부분 내역서
- ②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 ③기성 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 가. 안전관리비 사용(월별 또는 공정별)내역.
 - 나. 공정현황
 - 다. 시공확인 결과에 기록.
 -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여부
 - 마. 폐기물 처리 발생 신고 및 처리확인 증 사본.

(2)준공검사원.

- ①제출서류
 - 가. 준공검사원
 - 나. 준공부분 내역서
 - 다. 공사 준공 사진(전·후)
 -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마. 공사사진 철
 -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 ②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가. 공정현황.
 - 나.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다. 준공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3.5 변경 승인 요청

(1)설계변경 승인 요청

- ①제출서류
 - 가. 변경요청 공문

- 나. 변경 사유서.
- 다. 변경 총괄 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라. 변경(안) 설계도면
- 마. 구조계산서(필요시) 및 공사 시방서.
- 바.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각 2부 제출.

(2)공사기한 연기 원

①제출서류

- 가. 공사기한 연기 원
-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
- 다. 공사 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 원 제출)
- 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 마. 합의서(공사기한 연기 합의용)

②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2.3.6 하도급 관련 서류

(1)하도급 통지 서류

건설 산업기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서류

①통지서류

- 가. 하도급 계약 통지서
- 나.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다. 공사 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라. 예정공정표
- 마.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사본

②제출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부수 : 각 2부.

(2)하도급 관리대장

하도급 공사명 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2.3.7 안전관리 서류

(1)안전관리 계획서

계획서의 작성 기준은 “제5장 안전관리”에 따른다.

(2)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업자가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한다.

(3)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1 적용기준

(1)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는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3.2 반입

자재는 가능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재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1 적용범위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 시험 기준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③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
 -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장소

-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실행한다.
-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관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 ①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서울메트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 ①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업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 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5) 재시험

- ① 건설업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건설업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4.3 품질시험·검사의뢰

(1)의뢰절차

- ①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건설업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공사감독관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와 동행한다.
- ③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1 적용

(1) 적용범위

- 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①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건설업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 ②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기지 각종 설비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최단 시간 내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등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2억 이상 120억(토목공사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20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을 및 을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갑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을은 배상 책임을 진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2조에 따라 갑은 “서울메트로”, 을은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7) 선로 열차감시원 및 위험 경광등 설치 등

5.2 안전검사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사 중 구조물 및 케이블의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울메트로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①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계단시공이 어려울 경우
- ② 양카작업에 따른 지하수 용출
- ③ 기존 케이블의 훼손, 오염 등 기능장애 및 경미한 이동필요
-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2) 안전관리상태 점검

서울메트로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3 안전관리비

(1)증빙서류 비치

건설업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공사감독관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사용내역 제출

건설업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관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다.

(3)산업안전관리비는 사용 금액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6.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환경관리 일반

(1)수급인은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법정 환경기준의 잘못적용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처리와 보상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환경보전비는 사용 금액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6.3 환경관리계획

- (1)소음, 진동대책
- (2)분진, 먼지대책
- (3)통행 장애대책
- (4)건설폐자재대책
- (5)기타민원방지대책 및 조치방안

7.1 임시가설 시설물

7.1.1 공사표지판

- (1)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2)표지판에는 공사 명, 발주 청, 공사감독관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3)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4)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메트로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7.1.2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 (1)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2)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 (3)현장은 매일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8.1 준공예비점검

- (1)서울메트로는 사전에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필요시).
- (2)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 (1)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8.3 준공서류

- (1)설계준공도면(축소도면백도A3 평 철) 5부
- (2)설계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작한 CD 1부
- (3)공사(전, 중, 후 등) 사진첩 1부
- (4)공사(전, 중, 후 등)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작한 CD 1부
- (5)기타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사서류 1식